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. 17 선고 2022나31793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. 17 선고 2022나31793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. 18 선고 2020가단154257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2. 11. 15.

판결선고 2023. 1. 17.

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. 18. 선고 2020가단154257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러한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 판결 2쪽 10행, 3쪽 아래에서 5행, 5쪽 12행의 각 “H”을 “G”으로, 2쪽 아래에서 4행의 “2020.”을 “2010.”으로 고치는 외에는,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황기선, 판사 이상윤, 판사 김광섭